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윤완희 외 6명
소유물건(2024타경2932)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김형호

감정평가서번호: 도솔20241029-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솔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김 범 동

감정평가액	오억일천오백이만구천칠백칠십원정(₩515,029,77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김형호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10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윤완희 외 6명 (2024타경2932)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1.04	2024.10.30 ~ 2024.11.04	2024.11.05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793.01	토지	793.01	-	417,349,770
	건물	132	건물	132	740,000	97,680,000
		이	하	여	백	
합 계					₩515,029,7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 “갈산공동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1)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2)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3.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방법 개관

① 원가방식(원가법/Cost Approach)

원가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②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Market Approach)

비교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이 있음.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③ 수익방식(수익환원법/Income Approach)

수익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감정평가 방법 적용

(1) 토지의 평가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의 평가

본 건물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기준시점

- 1)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4년 11월 04일을 기준시점으로 함.
- 2)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2024.10.30. ~ 2024.11.04. 동안 실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사항

- 1) 본건 토지의 위치와 지적경계는 지적도 등 공부확인 및 개략적인 목측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며, 인접지와 경계여부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면적확정을 위해 서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 2) 본건 기호(3),(4)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윤종희, 윤완희, 윤숙희, 김윤정, 윤민재, 윤광진 지분 전부만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공유토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귀 제시목록상의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본건 기호(1) 토지상에는 이동식컨테이너(2개동) 등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이용상황, 철거 및 이동 등이 용이하여, 이에 구매됨 없이 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2024년 개별지가(원/㎡)
1	갈산리 116-11	727	대	농림지역	@312,400
3	갈산리 116-9	90	도로	농림지역	@96,700
4	갈산리 116-10	190	도로	농림지역	@96,700

[2]. 공시지가기준법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비교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공시기준일: 2024.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갈산리 518-35	장	1,482	공업용	농림지역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293,100

3.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발표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경기도 김포시 농림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4.01.01.~2024.09.30	2.035%	2024년 09월누계
2024.09.01.~2024.09.30	0.239%	2024년 09월 지가변동률
누계 (2024.01.01.~2024.11.04.)	2.320% (1.02320)	$(1+0.02035) \times (1+0.00239 \times 35/30)$

※ 미고시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내 에 소재하고 있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5.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업선, 전용부두) 등
환경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 자연환경(지반, 지질 등) 등
획지조건	면적, 형상, 고저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용도지역, 지구, 구역,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	1.00	1.00	1.00	1.04	1.00	1.00	1.04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형상에서 열세하나, 고저에서 우세하며, 종합적으로 획지조건에서 우세함.							
3,4	1.00	1.00	1.00	1.00	1.00	0.33	0.33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기타조건(도로 등)에서 열세함.							

6.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관련근거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수준과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가액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에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평가사례

(출처 : 협회 감정평가정보)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1	갈산리 1xx-x	대	808	농림지역	470,000	2023-03-08	담보
#2	갈산리 7-xx	장	3,135	농림지역	506,000	2022-08-18	담보

* 사례의 상세주소는 개인정보차원에서 생략함.

3)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사례	소재지	지목	계약면적 (㎡)	용도지역	거래가액 (천원)	토지단가 (원/㎡)	계약일자
#3	가현리 3xx-x	대	765	농림지역	580,000	601,000	2023-03-08
#4	가현리 3xx-x	대	765	농림지역	588,795	613,000	2023-05-03

*. 사례의 상세주소는 개인정보차원에서 생략함.

*. #3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580,000,000 - (800,000 \times 40/40 \times 150)\} \div 765 \approx 601,000\text{원}/\text{㎡}$$

*. #4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588,795,000 - (800,000 \times 40/40 \times 150)\} \div 765 \approx 613,000\text{원}/\text{㎡}$$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의 산정

본건과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사례인 <연번 #3>을 기준으로 비준한 기준시점 현재의 표준지(A)의 가격과, 기준시점 당시 표준지(A)의 가격을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함.

구분	기호	토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 보정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		
거래 사례	3	601,000	1.00	1.03337	1.00	1.00	0.94	1.00	0.92	1.00	1.00	0.865	537,213	1.791
표준 지	A	293,100	-	1.02320	-	-							299,900	

*. 시점수정(경기도 김포시 농림지역 지가변동률, 2023.03.08. ~ 2024.11.04.): 1.03337

*. 지역요인 :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 개별요인 : 거래사례 대비하여,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및 획지조건(고저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의 결정

본건과 비교가능 한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최근 부동산 경기의 추세 및 전반적인 경기상황 등을 종합참작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1.79으로 결정하였음.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293,100	1.02320	1.00	1.040	1.79	558,294	558,000
3	293,100	1.02320	1.00	0.330	1.79	177,151	177,000
4	293,100	1.02320	1.00	0.330	1.79	177,151	17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거래사례의 선정

사례	소재지	지목	계약면적 (㎡)	용도지역	거래가액 (천원)	토지단가 (원/㎡)	계약일자
#3	가현리 3xx-x	대	765	농림지역	580,000	601,000	2023-03-08
#4	가현리 3xx-x	대	765	농림지역	588,795	613,000	2023-05-03

*. 사례의 상세주소는 개인정보차원에서 생략함.

*. #3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580,000,000 - (800,000 \times 40/40 \times 150)\} \div 765 \approx 601,000\text{원}/\text{㎡}$$

*. #4 배분법에 의한 토지잔여단가

$$\{588,795,000 - (800,000 \times 40/40 \times 150)\} \div 765 \approx 613,000\text{원}/\text{㎡}$$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 <연번 #4>를 비교 사례로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개별요인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	1.00	0.94	1.00	0.95	1.00	1.00	0.893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3,4	1.00	0.94	1.00	1.00	1.00	0.33	0.310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및 기타조건(도로 등)에서 열세함.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613,000	1.00	1.03178	1.00	0.893	564,806	565,000
3	613,000	1.00	1.03178	1.00	0.310	196,069	196,000
4	613,000	1.00	1.03178	1.00	0.310	196,069	19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시산가액 검토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비고
1	558,000	565,000	-
3	177,000	196,000	-
4	177,000	196,000	-

2.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건물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함.

2. 대상건물의 개요

기호	구조	면적	용도	사용승인일
2	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	132㎡	소매점	2021-10-21

3. 재조달원가의 산정

1) 표준단가 결정

[출처: 한국부동산원발행, 건물신축단가표, 2023년]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연수
6-1-6-18	일반공장	철골조/철골지붕틀 그라스올판넬잇기 (층고6m기준)	3	754,000	35 (30~40)
6-1-6-8	일반공장	철골조/철골지붕틀 소골슬레이트잇기 (층고9m이하)	4	803,000	35 (30~4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재조달원가의 산정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본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사용자재의 품질, 시공방법 및 시공 정도 등을 비교하고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표준단가를 결정하고, 기타 부대설비의 존재유무 및 이에 따른 보정단가 등을 고려하여, 본건에 적용할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구분	재조달원가	비고
기호2	800,000원 / m ²	--

4. 건물단가의 산정

구분	재조달원가 (원 / m ²)	잔존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수	잔존가치율	적용단가 (원 / m ²)
기호2	800,000	37	40	37/40	740,000

※ 잔존가치율 = 잔존 내용년수 / 경제적내용년수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16-11	대	농림지역	727	727	558,000	405,666,000	
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월하로 149-2	116-11 가동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철골구조 준불연 판넬지붕 단층	132	132	740,000	97,680,000	800,000 × 37/40
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16-9	도로	농림지역	14	5	177,000	885,000	윤종희 지분
					90 × --				
					252				
					14				
					90 × --				
252									
14	5	177,000	885,000	윤완희 지분					
90 × --									
252									
14									
90 × --									
252									
6	2.14	177,000	378,780	김윤정 지분					
90 × --									
252									
4									
90 × --									
252									
4	1.43	177,000	253,110	윤민재 지분					
90 × --									
252									
4									
90 × --									
252									
4	1.43	177,000	253,110	윤광진 지분					
90 × --									
252									
4									
90 × --									
252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4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16-10	도로	농림지역	322	11.5	177,000	2,035,500	윤종희 지분
					190×--				
					5,320				
					322				
					190×--				
5,320									
					11.5	177,000	2,035,500	윤완희 지분	
					11.5	177,000	2,035,500	윤숙희 지분	
					4.93	177,000	872,610	김윤정 지분	
					3.29	177,000	582,330	윤민재 지분	
					3.29	177,000	582,330	윤광진 지분	
합 계							₩515,029,77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 "갈산공동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중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자루형 토지로서, 공업기타(고물상)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4) :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기호(3,4)를 경유하여,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갈산리 116-11, 116-9, 116-10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의견란 1. 5. 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21-10-21)

(2) 이용상태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며, 현황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의견란 1. 5. 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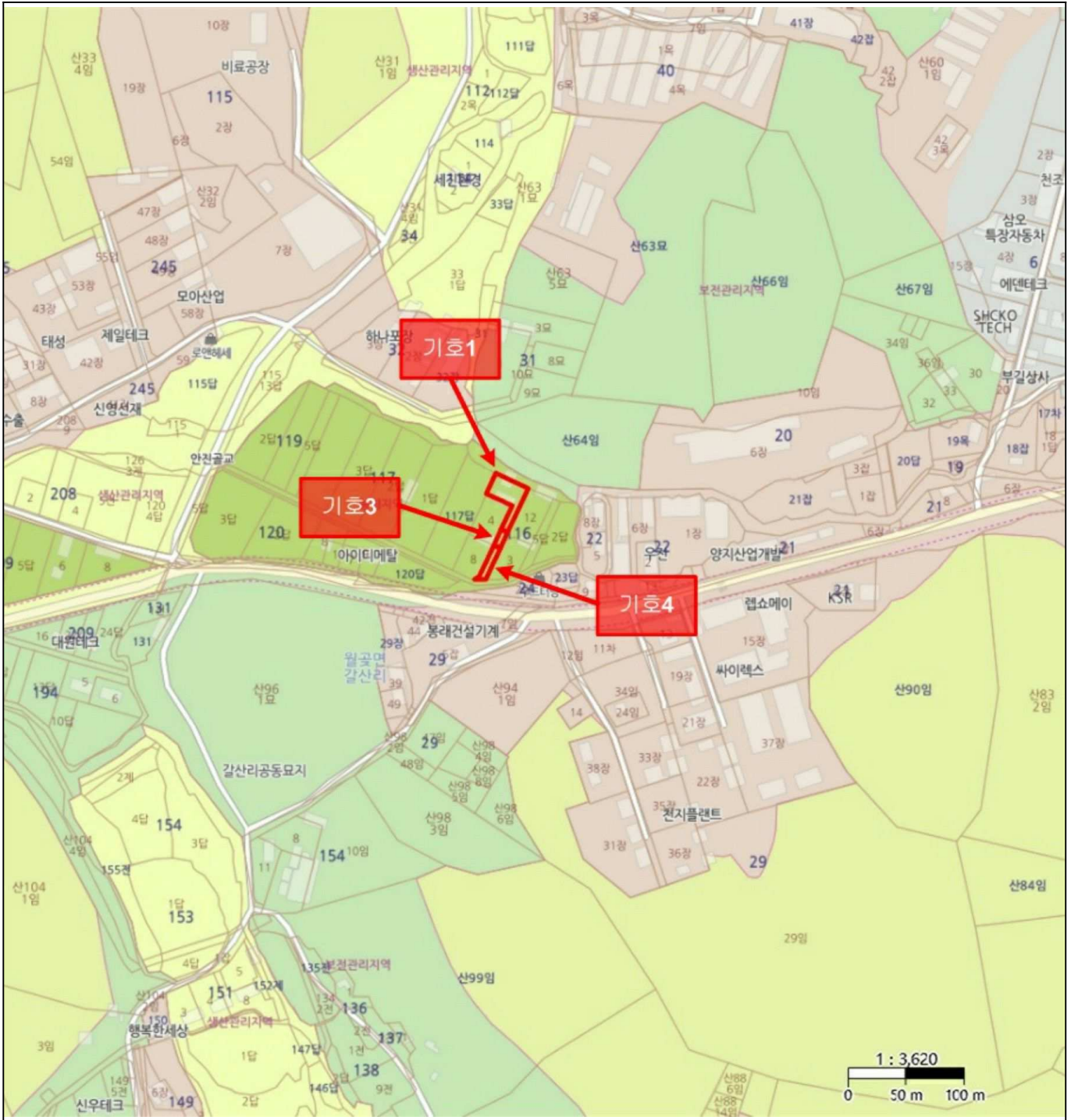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16-11 외
-----	--------------------------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16-1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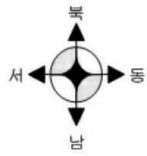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16-1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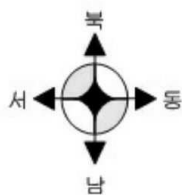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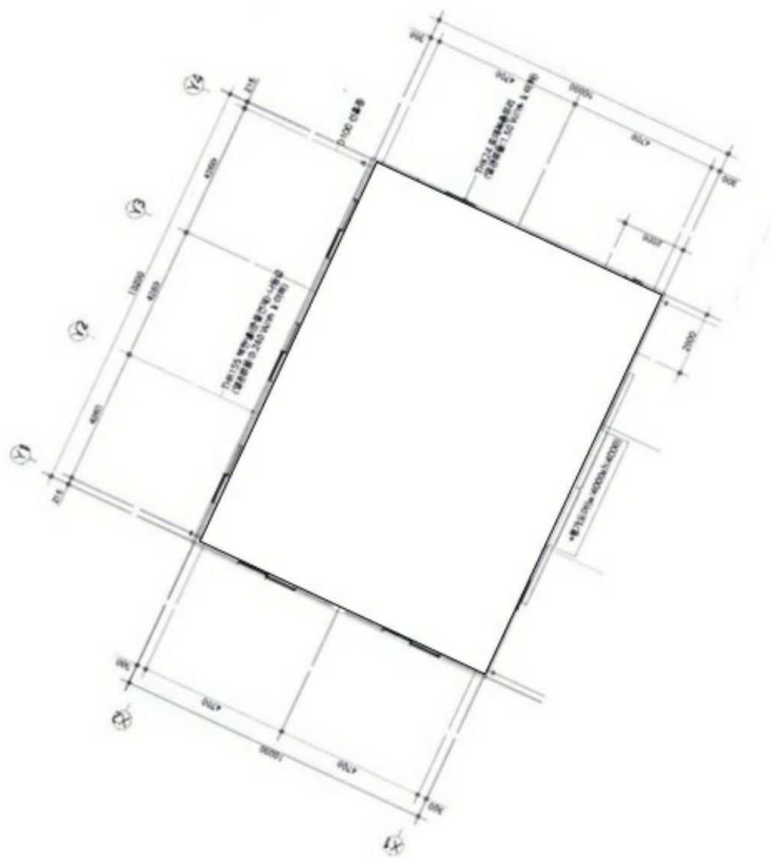
No scale



건물개황도



No scale



◆ 기호2 ◆

공부상 면적 : 132㎡



1



1



2



3



4

